

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64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 . 4.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·유지하고,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·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(안 제3조)
- 나. 지원면적 : 1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까지(안 제4조2항)
- 다. 지원대상 :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(안 제5조)
- 라. 지원신청 :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매년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(안 제6조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불임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그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 (2014.2.7.~2.28.) 결과 : 의견 없음.
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·유지하고,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·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범위) ① 시장은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

-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충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지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지원신청)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읍·면·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,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대상 결정)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.

- ② 시장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결정) 시가 지원규모, 지원범위,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친환경농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
제9조(관리·감독) ① 시장은 읍·면·동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수반 요인

-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(안 제4조)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제4조 (경영안정지원)

3. 미첨부 사유

-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제정시 검토

4. 작성자

-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